

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12. 19.

서울특별시의회

유정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관악4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유정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
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박물관 자료 구입 및

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에 대해 명시함으로써
서울시 박물관의 유물 등 소장품 확보에 있어
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및

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등을 참고하여
안 제3조의2에 박물관 자료 구입의 제한 사항을
신설하였으며,

안 제4조에2에 박물관 기증 자료 수증의
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